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제 회)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 (안 제8조 개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법 제 14조제6항에 따라 <u>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u> 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 ----- <u>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u> 은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연 락 처	02-3704-0571 02-3704-0573